

기로에 선 미국의 석면폐증 소송

신 동 천

현재 미국에서는 1940년 이후에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폐질환이나 불구상태에 있는 수만명의 소송사례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보상금중에서 변호사들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많아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가 최근 (1990. 7. 15)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려 이를 소개한다.

7월초 브룩클린 청문회에 수천명의 석면폐증 환자를 대표하여 수백명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연방재판소의 재판관인 Jack B. Weinstein은 만일 이 문제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재량권을 발휘하겠다고 최후통보를 하였다. Weinstein은 월남전에서 사용하였던 화학무기 Agent Orange로 인한 피해보상소송을 맡았던 재판관으로서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다루는 권위자이다.

이러한 연방재판소의 최후통보가 이 소송과 관련된 많은 변호사들과 회사에게 커다란 반항을 일으키고 있는데 결국 석면폐증환자 1인당 4만불씩 책정하고 있는 보상의 규모와 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회사의 재정, 그리고 그나마 부족한 보상금액의 30~40%를 소송비용으로 가져가려는 변호사들의 입장들이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논란의 가장 큰 예로서 1985년 폐업하기 이전까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면단열재 생산업체이었던 Manville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13만명 이상이 이미 사망하였거나 생존해 있는

석면폐증 환자들이 이 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진용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는 소송인들과 협상하기 위해 1982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놓고 있다. 수년간의 협상에 의해 전례없이 30억불이라는 거액의 Manville 개인재해보상기금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금액의 많은 부분은 현금보다는 회사주식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결정이 당시에는 회사와 피해자간의 타협의 좋은 본보기로 비추어졌으나 곧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즉, 소송청구비용과 법정비용이 이 기금을 고갈시켰으며 이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피해자들은 앞으로 수년간 보상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해보상기금의 심각한 현금부족현상이 일어나자 연방재판소는 일단 금년 8월 6일까지 모든 법정비용지출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중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다시 설정하고 지급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련전문가들은 앞으로 Manville 회사에 대한 피해소송인이 15만명까지 늘어날것이며 이들 1인당 4만불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60억불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금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으며 보상액을 줄이거나 변호사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변호사비용은 불확정요율(contingent-fee base)을 적용하여 총보상금액의 최소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폐증 소송사례가 불확정요율을 적용할만큼 변호인의 위협도가 크거나 사건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들이 비용으로 가져간다는데 대한 비판도 큰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석면폐증 소송사건이 과거의 몇몇기록들만 가지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워 이를위한 노력과 불확실성을 안고 대처해야 하므로 이 정도의 비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하여 집단간의 이익보다는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적절히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